



문서번호 행정 2015-0608

수 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께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mailto:kypark@pspd.org) )

제 목 국정원의 법관 등 공직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

날 짜 2015. 6. 9. (총 2 쪽)

## 국정원의 법관 등 공직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귀 의원도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였으며,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귀 의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보안법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국정원이 법관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보안법무규정 제33조 등과 대통령훈령인 보안법무규정 시행규칙에 신원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같은 규정 자체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 보안법무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임무) 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임용 예정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보안법무규정 제33조 신원조사 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 2항과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 행위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정원에 맡겨진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2003년에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별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국정원이 수행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국정원은 외부감시와 견제,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곳이어서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품을 파악하고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과거 존재하던 중앙인사위원회나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범죄이력이나 탈세 등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보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맡긴 보안업무규정 33조와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5.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주길 바라며,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폐지하는데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끝.

#### 별첨1.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정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